

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4일
허가번호		허가일자			

설치자	성명	생년월일			
	주소 (전화번호 :)				

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		년 월 일 / 제 호			
변경내용		변경 전	변경 후		변경 이유
설치 장소	기점				
	종점				
	경과지				
배관	연장	km	km		
	외경	mm	mm		
	조수(組數)	조(租)	조(租)		
위험물의 유별·품명(지정수량) 및 화학명 또는 통칭명					
지정수량의 배수		배	배		
위험물의 이송량		kl/일	kl/일		
펌프의 종류 등	종류·형식				
	전양정	m	m		
	배출량	kl/h	kl/h		
	기수	기(基)	기(基)		
그 밖의 위치·구조 및 설비					
착공예정 연월일		년 월 일	완공예정 연월일		년 월 일
그 밖의 필요한 사항					

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송취급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주소

신청인

(전화번호)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소방서장

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25 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
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	별첨 도면과 같음	수수료 없음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첨부서류

- 이송취급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
-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이송취급소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
 - 해당 이송취급소를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
 - 해당 이송취급소를 구성하는 건축물, 공작물 및 기계·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
 - 해당 이송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, 공작물 및 기계·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 중 변경에 관계된 것
 - 해당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, 피뢰설비, 소화설비,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
 - 압력안전장치·누설검지장치·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
-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
- 소화설비(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)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
-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
- 공사계획서, 공사공정표 및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것
-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작성한 서류(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)

작성방법

- 이 신청서는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에 사용됩니다.
-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의 난은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(가사용 승인신청을 별도로 하려는 경우에는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7호서식을 사용함).
-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,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,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,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.
- 기점·종점 및 경과지란에는 배관이 설치되는 시·군·구를 적고 기점 및 종점란에는 기점 또는 종점의 사업소명을 같이 적습니다.
- 품명(지정수량)을 적는 경우에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()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.
-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